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8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박광온 · 윤관석 · 권미혁

김해영 · 강병원 · 서영교

김상희 · 도종환 · 전혜숙

박완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無能力者”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조 중 “限定治產者가”를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無能力者”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조 중 “限定治產者가”를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限定治產者”를 “피한정후견인”으로, “禁治產者를”을 “피성년후견인을”로 한다.

제542조의8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

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無能力者의 營業과 登記) 未成年者 또는 <u>限定治產者</u> 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營 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 야 한다.	第6條(제한능력자의 營業과 登記) ----- <u>피한정후견인이</u> ----- ----- -----.
第7條(無能力者와 無限責任社員) 未成年者 또는 <u>限定治產者</u> 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會 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때에 는 그 社員資格으로 因한 行爲 에는 能力者로 본다.	第7條(제한능력자와 無限責任社 員) ----- <u>피한정후견 인이</u> ----- ----- ----- -----.
第8條(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 ①法定代理人이 未成年 者, <u>限定治產者</u> 또는 <u>禁治產者</u> 를 爲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8條(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 ①----- --- <u>피한정후견인</u> ----- <u>피성년후 견인을</u> ----- ----- ②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
1. 미성년자, <u>금치산자</u> 또는 <u>한 정치산자</u>	1. ----- <u>미성년후견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